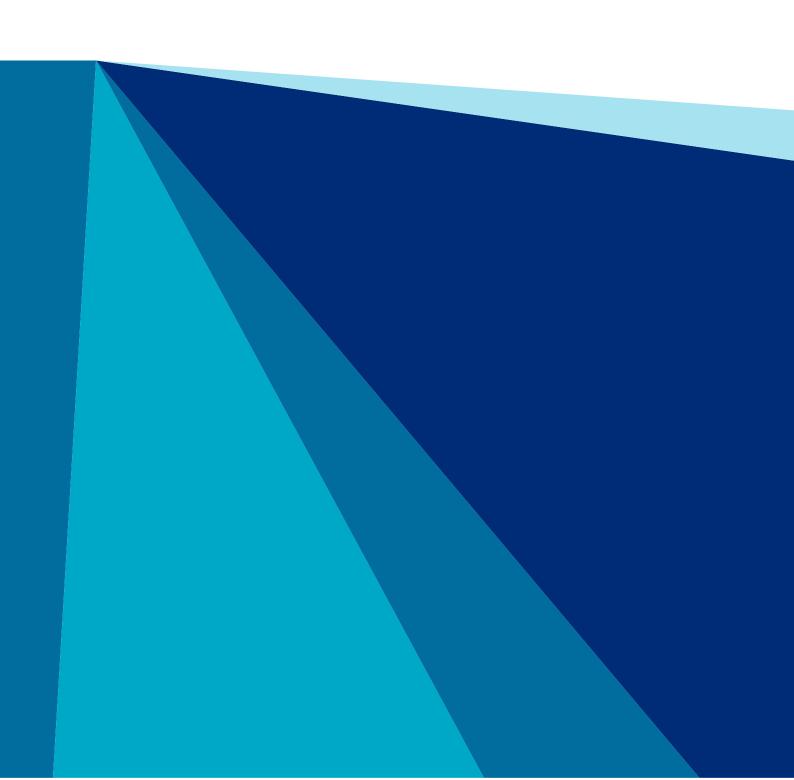


# 임직원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Manual

**Oracle Korea Ltd.** 



## 목차

1.	의료비 청구 필수 구비서류	3
2.	보험금 청구 PROCESS	4
3.	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	5
4.	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(급여/비급여/3 대 비급여)	8
5.	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	1 2

## 1.의료비 청구 필수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	확인사항			
공통서류		남청구서 및 정보동의서	■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서명 란에 자필서명 필수 (미성년 자녀의 청구건: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) ■ 사고내용 기재 - 상해사고: 사고 일시, 장소, 사고경위 등 6 하 원칙에 의거 작성 요망 - 질병: 정확한 진단명 or 병명을 기재	별첨서류		
	진단서		■ 환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원사유(병명/ 질병코드), 입원기간 기재된 것 - 입퇴원확인서에 <mark>입원사유(병명/질병코드)가 있는 경우 진단서 대체 가능</mark>			
입원	진료비계산서 영수증		■ 항목별 금액이 보험급여 및 비급여로 구분되고, 수납금액 확인된 전산발행영수증 - 소득공제용 납입확인서, 카드영수증, 현금매출영수증, 수기영수증은 접수 및 처리 불가			
	진료비세부내역서		■ 비급여진료비 발생 시 원무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발급	нно		
	진료비계산서 영수증		■ 항목별 금액이 보험급여 및 비급여로 구분되고, 수납금액 확인된 전산발행영수증 - 소득공제용 납입확인서, 카드영수증, 현금매출영수증, 수기영수증은 접수 및 처리 불가 -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제출	병원		
통원	진료비세부내역서		■ 비급여진료비 발생 시 원무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발급			
	처방 조제	의사 처방전	■ 환자보관용을 발급 받아 약제비 계산서와 함께 제출 함			
	의료비	영수증	■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 확인서 제출	약국		
	의료기관 직원 할인 의료비 청구시		■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- 의료기관 재직증명서 / 가족관계증명서 / 근로소득반영자료 -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항목을 확인 할 수 있는 취업규칙			
기타	산재/자동차 사고 등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된 상해사고의 추가요청서류		■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이 있을 경우 청구 가능 ■ 재해 입증서류 - 교통사고: 지급결의서(자보)+계산서(영수증)+진료비세부내역서 - 산재재해: 요양급여확인원(산재)+계산서(영수증)+진료비세부내역서 - 기타 재해사고: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+계산서(영수증)+진료비세부내역서 - 상황에 따라 진단서, 초진차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	해당 기관		
	의료보험	텀납입증명서	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요청 될 수 있습니다.(초과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)			

- ※ 상기 명시된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심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※ 보험사 심사 시 내원사유 또는 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※ 다른 실손의료비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, 가입보험사 직접 청구 또는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단,
- 우체국/새마을공고공제조합/신협공제조합 제외)
  - ※ 청구권 소멸시효 : 진료일로부터 3 년. 3 년 이내 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
- 사망, 장해, 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실 경우 Marsh Korea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요.

### 2. 보험금 청구 Process

#### ■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



- 보험사에서 서류접수가 진행되면 SMS 를 통해 접수 번호와 심사 담당자 성명, 연락처가 통보됩니다. (병명별 피보험자별 개별 지정)
- Mcare Online 보험금 청구 안내(MCare System)

사용자 등록 /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청구 시작 버튼 클릭 후 기본 기재사항과 증빙서류 첨부

#### ■ 보험금 접수 및 상담: Marsh Korea (마쉬코리아)

구분	담당자	전화	이메일	팩스번호		
Claim Advisory	이윤정 과장					
접수 및 구비서류 문의 (통화 중 및 부재 시)	02-2095-4800~4809 4861					
주소: (07326)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hree IFC 39 층 Marsh Korea (MMB Claims)						
Marsh Claim 문의 및 상담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 시~12 시 & 오후 1 시~6 시 입니다.						

<sup>\*</sup> Marsh Korea 는 단체보험 전문 컨설팅 회사로 보험금 청구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.

#### ■ 보험사 담당자 안내

보험사에서 청구 건에 대하여 심사 담당자가 배정 되면 심사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가 안내 됩니다. 청구 진행상황 및 지급 내역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 된 심사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
## 3.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

■ 보험사: 삼성생명, DB 손해보험

■ **보험기간:** 2022 년 06 월 1 일 ~ 2023 년 06 월 1 일

■ **보장내용** (단위: 원)

구분	보장금액	보장내용						
상해사망	연봉 3 배+ 2 천만	보험기간 중 빌	임직원					
	2 천만			(	배우자			
상해장해	연봉 3 배	보험기간 중 빌 ■ 장해등급에 따						
		질병사망	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시					
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	연봉 3 배 (최대 12 억)	질병 고도장해						
2 대 특정질병	2 천만	보험기간 중 년	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(최초 1회한)					
암진단	2 천만	■ 상피내암, 기티	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 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 (최초 1 회한) ■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: 10% /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: 30% ■ 기존 암진단 경력자 및 재발, 전이암 제외					
암수술	6 백만	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보장금액 지급 ■ 갑상샘암, 경계성 종양 1.8 백만 /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60 만						
암 입원일당	1 일당 10 만	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입원 시 3 일초과 1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(180 일 한도) ■ 갑상샘암, 경계성 종양 3 만 /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1 만						
간호비	입원 1 일당 3 만	입원 1 일부터 ■ 자동차사고, 신 ■ 정신 및 행동장 ■ 건강상태 및 5	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, 질병, 출산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치료 시입원 1 일부터 보장 (최대 365 일 (국민건강보험 적용기간) 한도)  자동차사고, 산재사고 제외  정신 및 행동장애(F 코드), 선천성 질환 등 (Q 코드) 제외 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(Z 코드) 제외  임신,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: O 코드 (O00~O99) 해당 건 보장					
	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, 질병, 출산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.							
	A 1 - 1 - 1 - 1	구분 입원	임직원					
상해.질병 급여		Ē	%에 해당하는 금액 답여 본인부담금' 에서 아래	배우자				
	3 천만 한도		통원항목별 공제금액'을 뺀 금액 항목	공제금액	자녀			
		통원	의원급/병원 및 약국 종합병원/전문요양기관/	1 만원과 급여 20%중 큰 금액				
			상급종합병원 및 약국	2 만원과 급여 20%중 큰 금액				
		E	통원 1 회당 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1	5 만원 한도로 지급				

	사해기대	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, 질병, 출산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.					
=	상해/질병	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%. (1 일 평균금액 10 만원 한도)					
상해.질병 비급여	각각 연간합산 3 천만 한도		통원 1 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'비급여 의료비'에서 아래 '통원항목별 공제금액'을 뺀 금액				
		통원	항목 공제금액				
					3 만원과 비급여		
			l	I 회당 (외래 및 처방조기 II다이브디 1 년간 톤인	*	안노로 시급	
		■ 비그어 구미거가		H당일부터 1 년간 통원 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!			
				는 의료합의합에 떠다 :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			
		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함 (임신 및 출산관련 보장 제외)					
			구분		공제금액	보장한도	
		│ │ 도수·체외충격파·경	등식치료	행위료, 약제비,	3 만원과	350 만원 이내	
				치료재료대 포함	비급여	(합산 50 회)	임직원
		주사료	T1=1	주사치료	30% 중	250 만원 이내(50 회)	
		자기공명영상 <sup>:</sup> (MRI/MRA		조영제,판독료 포함	큰 금액	300 만원 이내	배우자
				l 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회	 화여 최초 10 회 년	 보장하고, 이후	-114
		■ 도수·체외충격파·증식치료 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화여 최초 10 회 보장하고,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, 병변호전 등이					
		확인된 경우에 한	한하여 10	회 단위로 연간 50회 기	가지 보상합니다.		
			<증상의	개선, 병변호전 등은 아	떻게 확인하나요	2?>	
		- 증상의 개선,	병변호전	등과 관련하여 기능적	회복 및 호전여부	부는 관절가동(ROM),	
	a+	통증평가척도,	자세평가	및 근력 검사(MMT)를	포함한 이학적 검	d사, 초음파 검사	
3 대비급여	우측 도표	등을 통해 해당	부위의 처	메절기능부전등을 평가 <b>점</b>	한 결과로 판단힙	니다.	
	참조	■ 비급여(행위료, 약제비, 치료재료대, 조영제, 판독료 포함): 국민건강보험법 또는					
		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(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					
		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) ■ 게양체단인로보다 1년 단인로 점요					
		■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 단위로 적용 ■ 영양제,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보상 제외					
		■ 항암제, 미디전제 등의 목제와 전단어여 오요된 미흥 모장 제외 ■ 항암제, 항생제(항진균제 포함),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상해 비급여					
		또는 질병 비급여	여 에서 보	상 합니다			
				1 회 입원) 하여 2 종류(			
		치료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 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					
		- 도수·체외충격파·증식치료 중 2 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 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 회로 보고 각각 1 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					
		- 의료기관을 1 회 통원(또는 1 회 입원) 하여 치료목적으로 2 회 이상 주사치료 를 받더라도 1 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.					
		2 1 1— 1 — 1	0	""			
		- 의료기관을 1 회 통원(또는 1 회 입원)하여 2 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					
	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 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					경우 각 진단행위를	
		1 회로 보다 각각	¦ 1회당 급	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	· 적용합니다		
					및『독립유공지	예우에 관한 법률』에 따	·라 의료비를
		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			사회의 건강으로		
	■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. 다만,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						
	포함되지 않		조 급 십	, 납구 포는 납치인 결과	1포 정신 중국 <del>공</del>	o된 세표의 프리코 오루	00-
실손의료비	포함되지 않습니다. ■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.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(통원의 경약						의 경우
공통 사항	'공제금액'을 뺀 금액)의 40%를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						
	■ 1 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중인 입원(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)을 말합니다.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						·
							: 경우에는
	. — — . —	원기간을 각각 1 회 입원으로 봅니다. 아 다른 이류비가 함께 청구되고 간 항목벽 이류비가 구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격정을					

■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

위해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 (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) 통원 1 회로 보아 적용합니다. 이 때 공제금액은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.
-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 회 이상 통원치료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를받은 경우 1 회의 통원으로 보아 적용합니다. 이 때 공제금액은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.
- 다수보험의 처리(비례보상)\_실손의료비(상해.질병급여/상해.질병비급여/3 대비급여)
-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
-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
-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상기의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.(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,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포함)

## 4.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(급여/비급여/3 대 비급여)

#### 1. 실손의료비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(상해·질병급여, 상해·질병비급여, 3 대비급여 공통 공통 적용)

-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.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 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.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 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4.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인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
- 5.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
- ②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

#### 2. 급여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(상해·질병급여 공통 적용)

- ①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(본인부담금 상한제)
- 2.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(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)

#### 3. 상해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

-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임신, 출산(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),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.
- 2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경우
-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. 모터보트·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행사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,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)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③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자동차보험(공제를 포함합니다)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(과실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. 다만, 본인부담의료비(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) 는 상해급여에 따라 보상합니다.

#### 4. 질병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.

- ① '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'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정신 및 행동장애(F04~F99), 다만 F04~F09, F20~F29, F30~F39, F40~F48, F51, F90~F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
- 2.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(N96 ~ N98)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
- 3. 선천성 뇌질환(Q00~Q04) 다만,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 4. 요실금(N39.3, N39.4, R32)

- ②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
- 2.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다만,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질병급여에 따라 보상합니다.
- 3.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(다만, 「의료법」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)
- ③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
  - 가.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
  - 나. 출산이전의 양수검사, 기형아검사
  - 다.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, 영양제 복용
  - 라.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

#### 5. 비급여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(상해·질병비급여, 3 대 비급여 공통 적용)

- ① 다음의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치과치료(K00~K08, 다만,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, K00~K08 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보상) 한방치료(다만, 한의사를 제외한 '의사'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)에서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
- 2. 영양제,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.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.
- 가.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(효능/효과 및 용법/용량 등)으로 사용된 경우
- 나. 요양급여 약제로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에 따라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
- 다. 요양급여 약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
- 라.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된 경우(혼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위 가목 내지 다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)
- 3. 호르몬 투여, 보신용 투약,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.
- 4. 의치,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(Arm Sling),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. 다만,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 5.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(TV 시청료, 전화료,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),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, 간병비
- 6.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
- ② 아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가.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
  - 나.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, 모반(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(Q82.5)은 보상합니다)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
  - 다. 발기부전(impotence) · 불감증,
  - 라. 단순 코골음(수면무호흡증(G47.3)은 보상합니다),
  - 마.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(phimosis),
  - 바. 검열반 등 안과질환,
  - 사.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
- 2.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
  - 가.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 확대(다만,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)·축소술, 지방흡입술,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
  - 나.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(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)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  - 다. 치과교정
  - 라.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(안면)교정술
  - 마.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

- 바. 안경,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)
- 사.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(성장촉진)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
- 아.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
- 자.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
- 3.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
- 가.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(다만,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)
- 나. 예방접종(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)
- 다.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
- 4.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
  - 가.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
  - 나.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술
  - 다. 보조생식술(체내,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)
  - 라. 인공유산에 든 비용(다만,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)
  - 마.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
- 5. 입원 치과(비급여) 치료
  - 가. 치아보철, 보존, 금관, 틀니, 교정,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
- 6. 입원 한방(비급여) 치료
  - 가. 한방물리요법(수기요법, 전자요법, 온열요법, 추나요법 등) 및 차멀미, 비만,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
  - 나.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

#### 6. 상해비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.

-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임신, 출산(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),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.
- 2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경우
- 3.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인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
-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. 모터보트·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행사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,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)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③ 다음의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4. 자동차보험(공제를 포함합니다) 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(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. 다만,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.

#### 7. 질병비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.

-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인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
- ② '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'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정신 및 행동장애(F04~F99), 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- 2.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(N96 ~ N98) 치료에서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
- 3. 선천성 뇌질환(Q00~Q04) 치료에서 발생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- 4. 비만(E66) 치료에서 발생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- 5. 요실금(N39.3, N39.4, R32)
- 6. 직장 또는 항문 질환(K60~K62, K64)에 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- ③ 다음의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. 다만,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.
- 2.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(다만, 「의료법」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 3 조(보상내용)에 따라 보상합니다)
- ④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
  - 가.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
  - 나. 출산이전의 양수검사, 기형아검사
  - 다.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, 영양제 복용
  - 라.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

#### 8. 3 대비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.

-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경우
-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. 모터보트·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행사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,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)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③ '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'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정신 및 행동장애(F04~F99
- 2.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(N96~N98)
- 3. 피보험자가 임신, 출산(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),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(O00~O99)
- 4. 선천성 뇌질환(Q00~Q04)
- 5. 비만(E66)
- 6. 요실금(N39.3, N39.4, R32)
- 7. 직장 또는 항문 질환에 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(K60~K62, K64)
- ④ 다음의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1. 자동차보험(공제를 포함합니다.)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(과실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. 다만,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.
- 2.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(다만, 「의료법」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)
- ※ 상기 사항은 약관의 요약 본이며,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됩니다.

## 5.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

#### 1) 실손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인지 확인해 주십시오.

급여/비급여/3 대 비급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실 때, 주의하실 점은 비급여 항목만 표시된 영수증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반드시 보험급여 항목에 최소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한 비용이 있어야 하며,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2) 실손의료비 보장 중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의 정의

『하나의 질병』	『하나의 상해』
①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 (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	① 발생 원일이 동일한 상해 (같은 상해로 2 회 이상 치료를
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, 하나의 질병으로 2 회 이상 치료를	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)
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)	② 하나의 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
② 질병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	2 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 회 이상의 처방조제를
치료가 병행될 경우	받은 경우 각각 1 회의 외래 및 1 건의 처방으로 봄
③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	③ 이때 공제금액은 1 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
입원한 경우	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함

#### 3)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동의 필수 체크

2011 년 9 월 30 일자로 시행되는 『개인(신용)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규제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에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#### 4)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안내

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<u>본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치료비 만을 보장</u>하는 상품으로 타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, 중복보장이 불가능하며 비례보상 됩니다. (2003.10.01 개정 보험업법 중 보험업감독규정)

※ 타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의료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.